

##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9차 조정회(의) 개최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,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김 용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2월 28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.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 ◎ 조정종료(취하)

#### ▶ 중흥건설(주) 등 18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
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후 신고인들의 신고취하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.

### ◎ 조정불성립

#### ▶ (주)동연 등 3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
- 피신고인의 자료 미제출 및 대금지급능력 부재, 양당사자의 의견이 상이하고 피신고인이 손해배상을 주장, 신고인의 사건이첩 요청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어 공정거래 위원회로 사건이첩

### ◎ 조정불개시

#### ▶ (유)아산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
- 정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재청구, 하도급법 적용요건의 결여, 신고인의 취하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피신고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재신고, 피신고인의 부도로 인한 영업중단의 사유 등을 이유로 조정불개시 처리함.

### ◎ 당사자 출석 조정

#### ▶ (주)디데이에 대한 분쟁 건

-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,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건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에 당사자 출석, 조정성립